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0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4월 01일

발 의 자: 허 · 훈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박춘선,
유만희, 이성배, 이원형,
이효진, 최민규, 황철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21년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가 '23년 1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함(안 제1조).
- 나. 이자 지원 대상에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 다.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함(안 제3조, 제7조 및 제10조).
- 라.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의 이자지원 대상 자격 기준을 신설함 (안 제3조).
- 마.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학생”으로,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을 “대학생”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을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으로, “시설”을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나. 법 제2조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제1항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을 “학자금대출”로,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졸업생 등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휴학생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졸업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2.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따른 서울지역”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대표 등”을 “대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지역</u> <u>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안정</u> <u>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u> <u>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u> <u>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u> <u>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에</u>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u> <u>로 한다.</u>	제1조(목적) ----- <u>대학생</u> -- ----- ----- ----- <u>대학생</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기관”이란 <u>법 제2</u> <u>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u> <u>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u>	2. ----- <u>법 제2조</u> <u>제6호가목부터 라목</u> ----- ----- <u>시설 등</u> -----.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u>서울</u> <u>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u> <u>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u> <u>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u> <u>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u> <u>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u> <u>한 사람을 말한다.</u>	3. “대학생”이란 <u>서울특별시(이</u> <u>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u> <u>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u> <u>다.</u> 가. <u>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u> <u>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학교</u> <u>또는 시설 등에 재학 또는</u> <u>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날</u> <u>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u>

니한 사람

나. 법 제2조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학자금대출 -----
----- 대학생 -----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졸업생 등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휴학생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졸업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2.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
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
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
다.

④ (생 략)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대
출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
을 중단한다.

1. (생 략)

2.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지역
대학생의 요건 상실

3. (생 략)

제10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 4. (생 략)

5.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
표 등

6. (생 략)

에서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

-----.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대
표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1조(목적)	x	[용어 정비] “서울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대학생”정의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제2조(정의) 제2호	x	[용어 정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의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
제2조(정의) 제3호나목	△	[기술적 추계 곤란] “대학생” 정의를 확대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서울시 재정지출이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신규 편입 대상자의 규모, 개인별 대출 잔액과 같은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추계가 곤란함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2항제2호	△	[기술적 추계 곤란] 신규 대상자에 대하여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이라는 지원 기간을 설정하여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문의결과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기준 및 범위 등에 결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객관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 그 외 규정은 별다른 재정소요 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본 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범위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문의 결과 현 시점에서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편입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중 개인별 학자금대출 이자액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가 부족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상치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객관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